

TaxFlash

January 2026 / No. 03



Page 1

Exemption of import duty/excise on imported gifts/donations for natural disaster, public worship, charity, social or cultural purposes ^{P1}

Page 2

Update on financial information access ^{P2}

자연재해, 종교적 의례, 자선, 사회 및 문화 목적을 위한 수입하는 기부품 및 증여품에 대한 수입관세 및 증지세의 면제

2025년 12월 29일, 재무부(MoF)는 자연재해, 종교적 의례, 자선, 사회 또는 문화 목적을 위한 기부품·증여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 및 증지세 면제를 규정하기 위해 PMK-99¹를 발행하였습니다. PMK-99는 이전에 제정된 재무부 규정 PMK-69²(자연재해 관련) 및 PMK-70³(종교적 의례, 자선, 사회 또는 문화 목적 관련)을 간소화하고 대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PMK-99는 기존 PMK-69 및 PMK-70에 규정되어 있던 조항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PMK-99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재난 단계의 추가

PMK-99는 경보, 비상 대응, 복구 전환 단계를 포함한 재난 비상 단계 및 복구·재건 단계에 더하여, 수입관세 및/또는 증지세 면제 대상 조건 목록에 사전재난 단계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PMK-99는 사전재난 단계에서의 면제 혜택이 공예·종교 활동, 자선 활동, 사회 또는 문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부여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MoF Regulation No. 99 Year 2025 (PMK-99) dated on 29 December 2025 and effective from 27 February 2026

2 MoF Regulation No. 69/PMK.04/2012 (PMK-69) dated on 7 May 2012 and effective from 5 August 2012

3 MoF Regulation No. 70/PMK.04/2012 (PMK-70) dated on 7 May 2012 and effective from 5 August 2012

종교적 예배, 자선, 사회 또는 문화 목적을 위한 물품의 구분

PMK-70는 이전에 관세 및 물품세 면제 대상이 되는 수입 기부품 또는 증여품의 세부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PMK-99는 면제 대상 수입 기부품 또는 증여품을 목적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 종교적 예배 목적의 물품 (인도네시아에서 공인된 종교를 위한 물품)
- 자선/사회 목적의 물품 (비영리 목적이며, 보건 및 교육 지원을 포함)
- 문화 목적의 물품 (국제 문화 교류 촉진을 위한 물품)

재무정보 접근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

2025년 12월 31일, 재무부(MoF)는 세무 목적의 재무정보 접근에 관한 기술적 지침을 규정한 PMK-108⁴ 을 발행하였습니다. PMK-108 은 이전 규정인 PMK-70⁵ 및 그 개정판 (PMK-73⁶, PMK-19⁷, PMK-47⁸)을 폐지합니다. PMK-70에 대한 논의는 저희 [TaxFlash No.07/2017](#)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PMK는 다음의 이행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공통보고기준(CRS) 다자간 권한당국협정(MCAA)의 추가의정서(Amended CRS)
 - 가상자산 신고 프레임워크(CARF) MCAA (2026년 보고연도부터 적용 예정)
- 위 두 협정은 2024년 11월 19일 인도네시아 권한당국이 서명하였습니다.

CRS 관련 재무정보에 관한 PMK-108의 대부분의 조항은 기존 규정과 유사하나, 개정된 CRS에 맞추기 위해 일부 절차가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본 PMK에서 강조되는 주요 신규 사항은 CARF MCAA에 따른 정보교환 절차를 구현하기 위한 규정의 도입입니다.

재무보고 금융기관

CARF 보고 대상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CASP*) 중 관련 암호자산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CARF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또는 법적 구조, 그리고/또는
- 개인으로서, 고객을 대신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교환 또는 이전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교환 또는 이전 거래의 거래상대방 또는 중개자로서 활동하는 경우뿐 아니라,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CARF 보고 대상 CASP가 수행하는 사업 유형에는 디지털 금융자산 거래업자 및 CARF 보고 요건을 충족하는 기타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CARF 보고 대상 CASP는 인도네시아 국세청(DGT)에 등록해야 합니다.

4 MoF Regulation No. 108 Year 2025 (PMK-108) dated on 31 December 2025 and effective from 1 January 2026

5 MoF Regulation No.70/PMK.03/2017 (PMK-70) dated and effective from 2 June 2017

6 MoF Regulation No. 73/PMK.03/2017 (PMK-73) dated and effective 13 June 2017

7 MoF Regulation No. 19/PMK.03/2018 (PMK-19) dated and effective from 19 February 2018

8 MoF Regulation No.47 Year 2024 (PMK-47) dated and effective from 6 August 2024

관련 암호자산

관련 암호자산은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암호자산을 의미합니다:

- a.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 b. 특정 전자화폐 제품,
- c. CARF 보고 대상 CASP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결제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평가한 기타 암호자산.

보고 대상 정보

CARF 보고 대상 CASP는 다음 연도의 4월 30일까지 납세자 포털을 통해 국세청(DGT)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CARF 규정에 따른 금융계좌 실사 절차를 통해 식별된 보고대상 암호자산 사용자가 수행한 관련 거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고대상 암호자산 사용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AEOI-CARF 보고 지정 관할지역의 거주자로서 국내 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개인,- 사망한 개인의 분할되지 않은 상속재산 포함
- b. AEOI-CARF 보고 지정 관할지역을 거주지로 하는 법인,- 단, 정기적으로 주식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법인, 중앙은행, 정부기관 등은 예외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a. 암호자산 사용자의 신원 정보(예, 성명, 주소, 거주 국가, 유효한 자기확인서 등)
- b. CARF 보고 대상 CASP의 신원 정보(예, 명칭, 주소, 납세자 식별번호)
- c. 해당 과세연도 동안의 관련 거래:
 - 관련 암호자산과 법정통화 간의 교환
 - 하나 이상의 관련 암호자산 유형 간의 교환
 -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이루어진 미화 50,000달러 초과와 관련 암호자산 이전(소매결제)
 - 관련 암호자산의 이전

식별 절차

2026년 1월 1일부터, CARF 보고 대상 CASP는 암호자산 사용자가 계좌를 개설할 때 다음을 수행하여 재무계좌 식별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유효한 자기확인서(self-certification)를 수취하고, 자기확인서의 합리성과 유효성을 검토하며, 위 자기확인서 및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계좌 보유자의 조세상 거주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식별 절차는 모든 보고대상 암호자산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본 절차와 관련된 문서들은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국세청(DGT)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여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DGT의 참여 관할지역 관련 공지

기존 AEOI-CRS 체계하의 참여 및 보고 지정 관할지역 목록에 대한 DGT의 공지 외에도, DGT는 AEOI-CARF에 따른 관련 관할지역 목록을 DGT 및/또는 재무부(MoF)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경과조치

본 PMK에 규정된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2026년 1월 1일부터 수행되는 재무계좌 식별 절차는 본 PMK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록된 재무계좌에 대해서는 기존 PMK-70이 계속 적용됩니다.
- b. 2026년 10월 1일 이후 제출되는 보고서(및 필요 시 이전 제출보고서의 정정 포함) 및 2026년 자료연도(data year)와 그 이후 연도에 대한 보고서는 본 PMK의 규정에 따라 작성·제출되어야 합니다.

Your PwC Indonesia contacts

Abdullah Azis abdullah.azis@pwc.com	Gerardus Mahendra gerardus.mahendra@pwc.com	Raemon Utama raemon.utama@pwc.com
Adi Poernomo adi.poernomo-c@pwc.com	Hasan Chandra hasan.chandra@pwc.com	Raka Putra raka.putra@pwc.com
Adi Pratikto adi.pratikto@pwc.com	Hendra Lie hendra.lie@pwc.com	Riyadi riyadi.riyadi-c@pwc.com
Adrian Hanif adrian.hanif@pwc.com	Hisni Jesica hisni.jjesica@pwc.com	Runi Tusita runi.tusita@pwc.com
Alexander Lukito alexander.lukito@pwc.com	Hyang Augustiana hyang.augustiana@pwc.com	Ryuji Sugawara ryuji.sugawara@pwc.com
Aman Santosa aman.santosa-c@pwc.com	Irene Satyanagara irene.satyanagara@pwc.com	Sukma Alam sukma.alam-c@pwc.com
Andrias Hendrik andrias.hendrik@pwc.com	Kianwei Chong kianwei.chong@pwc.com	Surendro Supriyadi surendro.supriyadi-c@pwc.com
Angeline angeline.angeline@pwc.com	Lukman Budiman lukman.budiman@pwc.com	Susetiyo Putranto susetiyo.putranto@pwc.com
Angga Wardhani angga.w.wardhani@pwc.com	Made Natawidnyana made.natawidnyana@pwc.com	Sutrisno Ali sutrisno.ali-c@pwc.com
Anton Manik anton.a.manik@pwc.com	Margie Margaret margie.margaret@pwc.com	Suyanti Halim suyanti.halim@pwc.com
Antonius Sanyojaya antonius.sanyojaya@pwc.com	Marlina Kamal marlina.kamal@pwc.com	Tjen She Siung tjen.she.siung@pwc.com
Avinash Rao a.rao@pwc.com	Nicholas Sugito nicholas.sugito@pwc.com	Turino Suyatman turino.suyatman@pwc.com
Ay Tjhing Phan ay.tjhing.phan@pwc.com	Nikolas Handradjid nikolas.handradjid@pwc.com	William Christopher william.christopher@pwc.com
Brian Arnold brian.arnold@pwc.com	Novie Mulyono novie.mulyono@pwc.com	Yessy Anggraini yessy.anggraini@pwc.com
Dexter Pagayonan dexter.pagayonan@pwc.com	Oki Octabiyanto oki.octabiyanto@pwc.com	Yuliana Kurniadjaja yuliana.kurniadjaja@pwc.com
Enna Budiman enna.budiman@pwc.com	Omar Abdulkadir omar.abdulkadir@pwc.com	Yunita Wahadaniah yunita.wahadaniah@pwc.com
Esa Perdana esa.perdana@pwc.com	Otto Sumaryoto otto.sumaryoto@pwc.com	
Gadis Nurhidayah gadis.nurhidayah@pwc.com	Peter Hohtoulas peter.hohtoulas@pwc.com	

www.pwc.com/id

PwC Indonesia



@PwC_Indonesia

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 or send an email to id_contactus@pwc.com.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26 PwC Tax Indonesi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n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